보건복지부 | 보도참고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26.(금)

소록도 한센인 역사와 마리안느·마가렛 정신, 미래 세대에 전승한다

- 국립소록도병원·국가유산청·(사)마리안느와마가렛·고흥군 4개 기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립소록도병원(원장 정충현)은 6월 26일(금) 오전 10시 병원 별관 교육실(전남 고흥군 소재)에서 국가유산청, (사)마리안느와마가렛, 고흥군과 함께 소록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마리안느·마가렛 관련 유물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소록도가 간직한 한센인의 삶과 인권의 역사, 그리고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헌신이 담긴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록도는 한센인 강제격리와 치료, 공동체 형성 및 인권 회복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다. 또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40여 년간 한센인과 함께한 공간으로, 인류애와 봉사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마리안느·마가렛 관련 유물은 두 간호사의 의료봉사 활동은 물론 당시 소록도의 생활상과 한센인 공동체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근현대 의료·인권·사회복지 분야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당 유물 중 일부는 지난해 11월 21일 국가유산청이 도입·시행한 첫 번째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예비문화유산: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선정하여 훼손·멸실을 막고, 미래 문화자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국립소록도병원은 협약기관들과 함께 ▲ 소록도 문화유산의 조사·목록화 및 학술 연구,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 국가유산 지정·등록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유산) 등재 협력, ▲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관계기관들이 선제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계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소록도의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유산 행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소록도병원장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소록도 문화유산과 마리안느·마가렛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조사·연구할 계획이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등 다양한 보존·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국민이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안)

담당 부서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책임자	과 장	성윤호 (061-840-0503)
		담당자	사무관	오은정 (061-840-0504)
			학예연구사	백미영 (061-840-069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업무협약(안)**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국가유산청,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 사단법인 마리안느와마가렛(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소록도에 축적된 한센인의 삶과 인권의 역사, 그리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헌신이 담긴 문화유산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소록도에 형성된 한센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보존·관리와 가치 확산을 통해 인권과 연대, 인류애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소록도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협약기관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소록도 문화유산의 조사, 목록화 및 학술연구
2. 소록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3. 소록도 문화유산의 국가유산 지정·등록 추진
4. 소록도 문화유산의 세계유산(기록유산 포함) 등재를 위한 중장기적 협력
5. 소록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전시·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6. 기타 협약기관이 소록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제4조(비용부담) 협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기관의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분담 방식과 세부 사항은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5조(기밀유지)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 기관의 비공개 정보 및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관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8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6월 26일

국가유산청 고흥군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